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 후 1년간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청장이 관세사 등 징계 등의 조치 시 관세사회에 통보하며,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세사 등의 징계 시 통보·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입제한 국가기관의 범위(안 제21조의3 신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과 소속기관을 별도로 규정. 다만, 파견, 교육훈련, 출산휴가, 징계, 검임발령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제외 함.

나.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안 제21조4 신설)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입을 제한하되,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 가능한 통관업은 수입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다. 관세사 등 징계 시 통보·공고(안 제29조의2 신설)

관세청장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해당 관세사 소속 법인·사무소등의 주소 및 명칭, 징계의 내용 및 사유, 효력 발생일을 공개하고, 관세사회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수입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수입제한대상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다만, 각 국가기관에 그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관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13조의6을 적용할 때 수입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3.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 (수입제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 법 제2조의 4호 및 7호 업무는 법 제13조의6을 적용할 때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의 의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받은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2.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받은 관세사가 소속된 법인·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의 효력 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의 개시일 및 정지기간을 말한다.
-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사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통보받은 관세사회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재일로부터 기산한다.

1. 등록취소 : 3년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 해당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 6개월

4. 견책 : 3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영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 이후 수입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1조의3(수입제한 대상 국가기관 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6 제1항에 따른 수입제한대상 공 직퇴임관세사의 수입이 제한되 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 관으로 한다. 다만, 각 국가기관 에 그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기관을 별도의 국가 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 항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13 조의6을 적용할 때 수입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 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3.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

<신 설>

<신 설>

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국가기관
에서의 근무기관이 1개월 이하
인 국가기관

제21조의4(수입제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 법 제2조의 4호
및 7호 업무는 법 제13조의6을
적용할 때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
는 징계를 한 때에는 이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취
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의 의결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세사
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1.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
계를 받은 관세사의 성명·생년
월일·등록번호

2.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
계를 받은 관세사가 소속된 법
인·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신 설>

3.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의 효력 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의 개시일 및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사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통보받은 관세사회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최초 게재일로부터 기산한다.

1. 등록취소 : 3년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 6개월

4. 견책 : 3개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8